

죽은 태아 [] 매장 신고서
[] 화장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일		처리기간		즉시	
부(모)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-			
	주소			전화번호					
	사산장소			임신주수					
	사산 연월일			사산사유					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							
신고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	사산자(죽은 태아)와의 관계			
	주소			전화번호				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(화장) 신고합니다.

신고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 호							
죽은 태아 [] 매장 신고증명서 [] 화장							
죽은 태아	임신주수		사산사유		사산연월일		
신고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	사산자(죽은 태아)와의 관계	
	주소					전화번호	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						관인	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